

## 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등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 및 그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\*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7월 9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(수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\*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

○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.

○ ①전통시장, 농수산물도매시장, 대규모점포, 해수욕장, 야영장,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, ②장애인·노인·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, ③공항, 항만, 물류시설, 의료·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 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.

○ 또한,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.

○ 공연장·체육시설·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,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·공원·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.

□ 다음,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,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.

○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한다.

□ 마지막으로,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·단체는 ‘위기관리 표준매뉴얼’, ‘위기대응 실무매뉴얼’ 및 ‘현장조치 행동매뉴얼’을 각각 작성·운영하게 된다.

- (위기관리 표준매뉴얼)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·운영
- (위기대응 실무매뉴얼)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·운영
- (현장조치 행동매뉴얼)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작성·운영

□ 이상민 장관은 “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며,

○ “정부는 재난의 예방·대비부터 대응·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	책임자	과 장	양기현 (044-205-5250)
		담당자	서기관	남송희 (044-205-5251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

# 참고1

##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신규대비표

### 1 자연재난 유형

재난관리 주관기관	현 행	개 정 안
	재난 및 사고 유형	자연재난 유형
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	자연우주물체의 추락 · 충돌	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<b>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	우주전파 재난	「전파법」 제51조에 따른 <b>우주전파재난</b>
행안부	풍수해(조수는 제외한다)·지진·화산·낙뢰·가뭄·한파·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<b>낙뢰, 가뭄, 폭염 및 한파</b>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	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b>풍수해</b> (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)
		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지진재해</b>
		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b>화산재해</b>
환경부	황사	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	조류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	하천·호소 등의 <b>조류 대발생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해수부	조류 대발생(적조에 한정한다)	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로서 <b>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
	조수(潮水)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b>풍수해</b> 로서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산림청	산사태	「산림보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<b>산사태</b> 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
### 2 사회재난 유형

재난관리 주관기관	현 행	개 정 안
	재난 및 사고 유형	사회재난 유형
교육부	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	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교육시설</b> (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)의 화재·붕괴·폭발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(이하 "화재등"이라 한다)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제2조에 따른 피해(이하 "대규모 피해"라 한다)
	<신 설>	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b>어린이집</b>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과기정통부	정보통신사고	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<b>방송통신재난</b> (자연재난은 제외한다)
	<신 설>	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<b>연구실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위성항법장치(GPS) 전파혼신	「전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전파의 혼신</b> (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 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)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	<신 설>	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<b>인공우주물체</b> 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
외교부	<신 설>	<b>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</b>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해외에서 발생한 재난	<b>해외재난</b>
법무부	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</li> <li>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교정시설</b></li> </ul>

재난관리 주관기관	현 행	개 정 안
	재난 및 사고 유형	사회재난 유형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<b>보호관찰소 및 갹생보호시설</b></li> <li>-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<b>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</b></li> <li>-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른 <b>치료감호시설</b></li> <li>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b>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</b>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</li> <li>- 「난민법」 제41조 및 제45조에 <b>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난민지원시설</b></li> <li>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<b>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</b></li> </ul>
국방부	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	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국방·군사시설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행안부	<신 설>	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<b>승강기 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	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8조 및 29조에 따른 <b>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<b>정보시스템의 장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정부중요시설 사고	「정부청사관리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<b>청사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공동구 재난 (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)	<삭 제> ※ 공동구 재난관리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
행안부 경찰청	<신 설>	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<b>도로,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 인파</b>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행안부 소방청	다중 밀집시설 대형 화재	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소방대상물의 화재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화재·위험물 사고	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<b>위험물의 누출·화재·폭발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문체부	<신 설>	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<b>야영장</b>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관광진흥법」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<b>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<b>공연장</b>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</li> <li>■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<b>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</b>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</li> </ul>
농식품부	가축질병	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b>가축전염병</b> 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
	저수지 사고	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<b>저수지</b> 의 붕괴·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b>농수산물도매시장</b> (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,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)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<b>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</b> (수산물유통센터는 제외한다)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산업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가스누급 및 누출</b> 사고</li> <li>■ <b>원유누수</b> 사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6조제1항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41조제3항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<b>가스사고</b>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</li> <li>■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</b>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</li> </ul>

재난관리 주관기관	현 행	개 정 안
	재난 및 사고 유형	사회재난 유형
	<신 설>	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석유의 정제시설·비축시설</b>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<b>주유소의 화재등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b>대규모점포의 화재등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■ 전력 사고 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	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른 <b>전기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<b>제품사고</b> (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)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원자력안전 사고(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)	<삭 제> ※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
복지부	<신 설>	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b>시설의 화재등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-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<b>노인복지시설</b> 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<b>아동복지시설</b>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<b>장애인복지시설</b> 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)
	<신 설>	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<b>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보건의료 사고	<삭 제> ※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
복지부 질병청	감염병 재난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감염병의 확산</b> 으로 인한 피해
환경부	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	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댐</b> (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(發電)용 댐은 제외한다)의 붕괴·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미세먼지	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미세먼지</b> 로 인한 피해
	식용수 사고	「수도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<b>수도의 화재등</b> 및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b>먹는물의 수질오염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<b>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</b> 관련 사고(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	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<b>화학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	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<b>환경오염</b> (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)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고용부	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	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<b>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국토부	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 및 사고	「건축물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건축물의 붕괴·전도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b>공항의 화재등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<b>공동구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
재난관리 주관기관	현 행	개 정 안
	재난 및 사고 유형	사회재난 유형
	도로터널 사고	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도로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물류시설</b> [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나목4)에 따른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)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■ 고속철도 사고 ■ 도시철도 사고	「철도안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<b>철도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항공기 사고	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<b>항공기사고,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 안전시설 장애	<삭 제> ※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
	육상화물운송 사고	<삭 제> ※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
해수부	<신 설>	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12호에 따른 <b>농수산물도매시장(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)</b>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( <b>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</b> )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항만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해수욕장의 안전사고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■ 해양 선박 사고 ■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	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해양사고</b> (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, 해양오염은 제외한다)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해수부 해경청	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	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b>해양오염</b>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중기부	<신 설>	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<b>전통시장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여가부	<신 설>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<b>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<신 설>	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<b>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금융위	■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	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기관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 중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<b>금융기관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※ 금융 전산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 통합 이동
원안위	원자력안전 사고 (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)	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<b>방사능재난</b>
	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	<b>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유산청	문화재 시설 사고	■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·제5항·제6항에 따른 <b>문화유산·보호구역·보호물 및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■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<b>자연유산·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화재</b>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산림청	<신 설>	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b>사방시설의 붕괴·파손</b>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	산불	「산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<b>산불</b>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
재난관리 주관기관	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재난 및 사고 유형	사회재난 유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해당 중앙행정 기관	<신 설>	국가핵심기반의 마비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)로 인한 피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분야</th> <th>국가핵심기반</th> <th>주관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에너지</td> <td>■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산업부</td> </tr> <tr> <td>정보통신</td> <td>■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·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 ■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(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)과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과기정통부 등</td> </tr> <tr> <td>교통수송</td> <td>■ 교통체계(물류체계를 포함한다)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국토부 해수부</td> </tr> <tr> <td>금융</td> <td>■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기재부 금융위</td> </tr> <tr> <td>보건의료</td> <td>■ 의료(응급의료를 포함한다)·약사(藥事)·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</td> <td>복지부</td> </tr> <tr> <td>원자력</td> <td>■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산업부 원안위</td> </tr> <tr> <td>환경</td> <td>■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환경부</td> </tr> <tr> <td>식용수</td> <td>■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(湛水)부터 정수(淨水)까지 계통상의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환경부</td> </tr> <tr> <td>정부청사</td> <td>■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행안부 등</td> </tr> <tr> <td>문화재</td> <td>■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·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·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유산청</td> </tr> <tr> <td>공동구</td> <td>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</td> <td>국토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분야	국가핵심기반	주관기관	에너지	■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산업부	정보통신	■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·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 ■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(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)과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과기정통부 등	교통수송	■ 교통체계(물류체계를 포함한다)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국토부 해수부	금융	■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기재부 금융위	보건의료	■ 의료(응급의료를 포함한다)·약사(藥事)·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	복지부	원자력	■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산업부 원안위	환경	■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환경부	식용수	■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(湛水)부터 정수(淨水)까지 계통상의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환경부	정부청사	■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행안부 등	문화재	■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·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·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유산청	공동구	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국토부
	분야	국가핵심기반	주관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에너지	■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산업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보통신	■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·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 ■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(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)과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과기정통부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교통수송	■ 교통체계(물류체계를 포함한다)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국토부 해수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금융	■ 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기재부 금융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보건의료	■ 의료(응급의료를 포함한다)·약사(藥事)·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	복지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원자력	■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산업부 원안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환경	■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환경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식용수	■ 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(湛水)부터 정수(淨水)까지 계통상의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환경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정부청사	■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행안부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문화재	■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·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·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·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유산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동구	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,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·인적 자산 등	국토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참고2

## 용어의 뜻(정의) \_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§3)

용어	뜻(정의)
재난	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함
자연재난	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사회재난	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함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* 시행령 제2조(재난의 범위)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
재난관리	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
긴급구조	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, 응급처치,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함
재난관리 주관기관	<b>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함</b> * 시행령 제3조의2(재난관리주관기관) 및 별표 1의3
재난관리 책임기관	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함 가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) 나. 지방행정기관·공공기관·공공단체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)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기관 * 시행령 제3조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) 및 별표 1의2
긴급구조기관	소방청·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함. 다만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·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함
긴급구조 지원기관	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,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함 * 시행령 제4조(긴급구조지원기관)와 시행규칙 제2조(긴급구조지원기관) 및 별표 1